스위스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도와의 비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독립 운용사 인가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

스위스는 2018년 6월 15일 제정된 금융기관법(FinIA)에 이르러서야 독립 자산 운용사를 건전성 감독의 대상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서비스법(FinSA)과 함께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17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위임에 근거하여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 자산을 영업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2020년 이전에 스위스의 독립 운용사는 자율규제기구(SRO) 가입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만을 받았습니다. 기존 회사들은 2022년 말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1]

싱가포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독립 운용사를 일반 펀드 운용 제도에 포함시켰고, 2012년과 2024년 두 단계에 걸쳐 그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 모델과 관계없이 모든 운용사에 단일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이를 직접 감독합니다. 스위스는 집합자산운용업자와 구별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별도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독을 민간 감독기구에 맡겼는데, 이 감독기구 자체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와 감독을 받습니다.[2]

자본, 지배구조 및 고객 분류

정량적 요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위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금으로 납입된 최저자본금 10만 스위스프랑과 고정비용의 4분의 1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경영진은 최소 2명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1명으로도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3] 싱가포르 A/I 운용사는 25만 싱가포르달러의 기본자본, 싱가포르 거주 최고경영자, 이사 2명, 관련 전문인력 2명, 대리인 2명이 필요하며, 여기에 위험기준자본이 추가됩니다. 싱가포르의 요건은 자본과 인력 면에서 다소 무겁습니다. 스위스 제도에서는 감독기구와 그 감사에 드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두 제도 모두 고객을 분류하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규칙을 완화합니다.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에 따르면 고객은 개인고객, 전문고객 또는 기관고객으로 분류됩니다. 부유한 개인고객은 5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자산과 필요한 지식을 갖추거나, 2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전문고객으로 취급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4] 싱가포르는 스위스법과 달리 소득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두 금융센터 모두 고객이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메커니즘은 유사합니다. 스위스의 옵트아웃은 개인고객을 전문고객 범주로 이동시키는 반면, 싱가포르의 옵트인은 고객이 이미 자격을 갖춘 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싱글 패밀리오피스

싱글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취급도 유사합니다. 스위스법은 경제적 또는 가족적 유대가 있는 사람의 자산만을 운용하는 자를 라이선스 의무에서 면제합니다.[5] 싱가포르는 라이선스 및 영업행위 규정(Licensing and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s) Second Schedule의 면제를 통해 같은 결과를 달성합니다. 스위스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서 이 면제는 라이선스에만 적용되며, 자금세탁 방지 및 투명성 의무는 해당되는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싱가포르는 패밀리오피스를 세제 혜택과 더 긴밀하게 연계하며, 이 점은 제E편 제III장에서 다룹니다.

업계 재편

스위스의 개혁은 뚜렷한 업계 재편을 촉진했습니다. 제네바 편에서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FINMA는 2025년 2월까지 1,864건의 신청 중 1,532건을 승인했고, 약 650개 운용사는 신청하지 않아 회사 수가 26% 감소했습니다. 운용사의 운용자산 중앙값은 6,100만 스위스프랑이었습니다.[6] 다른 연구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FINMA의 인가를 받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1,309개로 집계했으며, 그중 26%가 제네바에 있었고 운용자산은 약 8,500억 스위스프랑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그중 83%가 상근 직원 1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7] 두 자료는 기준일과 방법이 달라 인가 회사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2012년에, 그리고 등록 운용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시장을 떠나야 했던 2024년에 다시 비슷한 선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싱가포르의 외부자산운용사 수에 관해서는 스위스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공개 수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압력은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감사, 기술 및 보관 관계에 드는 고정비용 때문에 일정한 최소 규모가 필요하므로, 소규모 회사들은 합병하거나 플랫폼에 합류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비교가 보여 주는 것

두 금융센터는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자에게 라이선스, 최저자본, 자격 있는 경영진, 독립적 보관, 컴플라이언스 및 자금세탁 방지 통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실질적 기준으로 수렴했습니다. 차이는 감독 체계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라이선스 부여에서 폭넓은 재량을 가진 단일의 강력한 규제당국에 의존하며, 이 당국은 지침, FAQ 및 라이선스 조건을 활용하여 제도를 조정합니다. 스위스는 상세한 연방 법률과 시행령에 의존하며, 이는 업계에 가까운 감독기구를 통해 적용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두 금융센터에서 모두 활동하는 운용사에게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중간 단계가 적고 규제당국의 재량이 더 큰 상황에서 MAS의 요구를 직접 충족해야 합니다. 스위스 법인은 1차적으로 감독기구를 상대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모든 운용사가 MAS 자체의 라이선스 심사를 거치므로, 싱가포르 제도는 진입 시점에서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도는 금융서비스법을 통해 고객에 대한 영업행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합니다.

수치로 보기

싱가포르의 운용자산: 2012년 말 1조 6,300억 싱가포르달러, 2025년 말 6조 7,000억 싱가포르달러. 싱가포르에 투자팀을 둔 자산운용사: 2025년 말 1,320개. 싱가포르 외부에서 유입된 자산의 비중: 2012년 약 80%, 2025년 76%. 지침 SFA 04-G05: 2012년 8월 7일 발표, 최종 개정 2025년 9월 3일. 과거 등록 제도: 적격 투자자 최대 30명 및 2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 2024년 8월 1일 폐지. 기본자본: 25만 싱가포르달러(A/I), 50만 또는 100만 싱가포르달러(리테일). 위험기준자본: 총 위험요구액의 120% 이상. 최고경영자의 최소 경력: 5년(A/I) 및 10년(리테일). 라이선스 심사: 최대 6개월, 이후 원칙적 승인 조건 충족에 최대 6개월. 적격 투자자: 순 개인자산 2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순 금융자산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또는 소득 3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리테일 운용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200만~2,500만 싱가포르달러. 스위스 비교: 최저자본금 10만 스위스프랑, 2025년 5월 31일 기준 인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1,309개.

주

1.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IV장, 「La loi sur les établissements financiers」 절.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및 2022년 12월 31일 기한에 관한 PwC Switzerland 자료를 인용; 2020년 1월 1일 시행된 Federal Act of 15 June 2018 on Financial Institutions (FinIA; SR 954.1) 제17조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VII장, 「Les organismes de surveillance : un maillon nouveau」 절.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인용: FINMA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감독기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를 감독하며, 제재 집행은 여전히 FINMA의 소관임. ↩

3.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IV장, 「La loi sur les établissements financiers」 절 및 제E편 제VII장, 「La succession du gestionnaire indépendant」 절. 금융기관법(FinIA) 제20조(최소 2명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경영진,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 1명으로 충분), 제22조 제1항(현금 납입 최저자본금 10만 스위스프랑) 및 제23조(고정비용의 4분의 1 이상의 자기자본) 참조. ↩

4.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IV장, 「La loi sur les services financiers」 절. Federal Act on Financial Services (FinSA; SR 950.1)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제2항 참조. ↩

5.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VII장, 패밀리오피스에 관한 절. 금융기관법(FinIA) 제2조 제2항 a호 참조. ↩

6.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VII장, 「La transformation réglementaire des gestionnaires indépendants」 절. Val Index, “Gestionnaires de fortune indépendants Suisse”, valindex.ch, 2026년 1월 31일 인용. ↩

7.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VII장, 「Genève, Zurich et Lugano : la géographie des gestionnaires indépendants」 절. WealthSummit 연구(Künzle, Baumann, Feldmann; *Allnews*, 2026년 3월 19일) 인용.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